



## 미국 오피오이드(opioid) 사태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박정희 선임연구원

미국은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상태임. 제약회사의 무분별한 홍보 활동과 미국 의료 보험시스템이 이러한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이로 인해 2천여 건 이상의 오피오이드 관련 소송이 계류 중에 있어 기업이 부담하는 배상금이 커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적용에 대한 분쟁이 미국 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sup>1)</sup> 남용은 미국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추정됨

- 오피오이드는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암 통증 관리에 효과를 인정받아 제한된 범위에서 처방하고 있었으나, 1990년대 비암성 만성통증에도 오피오이드를 처방하기 시작하면서 약물 과다복용에 의한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함<sup>2)</sup>
-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이 많은 상위 10개국의 전체 사용량 중 미국의 사용량이 99.4%(2015년 기준, 79,700kg)로 미국 의료계의 오피오이드 처방 남용이 약물중독으로 이어졌다는 평가임<sup>3)</sup>
- 2001년 이후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의료비용, 사법비용,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관련 비용, 중독이나 강제수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 등을 포함한 경제적 손실은 1조 달러를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됨<sup>4)</sup>

1) 양귀비에서 생성되는 마약성 진통제 및 그와 동일한 합성 진통제를 통칭하는 말로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에 있는 ‘오피오이드 수용체’에 결합해서 신경세포의 기능을 저해함. 주로 수술이나 암에 동반되는 통증관리에 사용되고 있으나 과도하게 사용 시 호흡곤란, 환각 등 정신적 작용도 있기 때문에 약물의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美질병통제예방센터(CDS)에 따르면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수는 1999년 10만 명 당 6.1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21.7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약물 과다 중독 사망자 중 68% 가량이 오피오이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17년 미국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 38,659명을 상회하는 수치로 심각한 사회문제라 할 수 있음

3) NADCP(National Judicial Opioid Task Force 2019. 7), “The Opioid and Addiction Epidemic and the response of state courts”, p. 6

4) <https://altarum.org/news/economic-toll-opioid-crisis-us-exceeded-1-trillion-2001>

■ 오피오이드 사태의 주된 원인은 제약회사의 무분별한 홍보 활동과 미국의 의료보험시스템 등인 것으로 분석됨<sup>5)</sup>

- 제약회사 및 유통업체가 오피오이드에 대한 남용과 중독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과도하게 공급하고 불법시장에 유통하는 등 남용사태를 초래하였음
  - 수술이나 암 환자에게 주로 처방되었던 오피오이드는 1995년 퍼듀파마(Purdue Pharma)사가 ‘옥시콘틴’이라는 오피오이드계 진통제를 FDA로부터 시판 승인을 받아 만성통증환자에게도 판매를 확대함
-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의 경우에도 만성통증에 즉효성을 보이는 오피오이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필요 이상의 기계적 처방이 이루어짐
  - 약국의 경우 과잉 처방전을 간과했거나, 부작용이나 다른 약물과 병용 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부족하게 하는 등의 혐의가 있음
-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은 만성통증에 대해 운동요법이나 대체치료를 보장하지 않아 오피오이드가 만성통증 치료에 과잉 처방되고 있으며, 현재 의료보험시스템에서는 대안이 없는 상황임

■ 오피오이드 중독 만연이 지방재정을 압박함에 따라 주(州,) 카운티, 노동조합 등은 진통제 제조 및 판매, 유통, 처방에 참여한 기업이나 개인을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sup>6)</sup>

- 다수의 주(州)와 카운티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오피오이드 중독 만연이 공적의료보험의 의료비 증가와 사법비용 증가, 감시 의사와 검시관의 인건비 증가 등 다양한 형태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임
- 난립하는 소송의 주요 쟁점은 ① 중독성 위험을 알고도 판매를 지속한 제약회사의 사기행위, ② 의약품 도매회사의 유통관리 소홀에 대한 과실책임, ③ 유통업체의 부당표시 및 인위적인 대량주문 등에 대한 의심사례 보고의무 누락 등 크게 3가지임
- 미국 법원은 난립하는 오피오이드 소송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구역소송(MDL: Multi District Litigation)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MDL에 집적된 오피오이드 소송 건수는 2019년 7월 기준 2,036건으로 이 중 철회 또는 반려가 된 소송은 28건임

■ 오피오이드 생산·유통·판매·처방에 관련한 피고가 피해자와의 화해 또는 재판에서 확정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피고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배상금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험 적용에 대한 분쟁 등 보험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됨<sup>7)</sup>

- 이번 사태로 보험회사의 PL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과 기업책임보험(CGL: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의료과실 배상책임보험, 약사 배상책임보험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5) SOMPO 未来研レポート(2019. 10), “米国のオピオイド危機と損害保険業界への影響”, p. 93~96

6) <https://www.insurancejournal.com/news/national/2019/05/27/527539.htm>

7) <https://www.cozen.com/news-resources/publications/2019/general-liability-insurance-and-the-opioid-epidemic>

- 예상되며, 기업 실적악화에 따른 발생손해를 보장하는 임원배상책임(D&O) 보험에도 영향을 미칠 것임
- 현재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인 기업 사이에서 발생하는 소송은 기업책임보험(CGL)의 담보위험을 둘러싼 소송이 주요 쟁점이 될 것임<sup>8)</sup>
  - 재판에서는 주(州)정부의 손해배상청구가 ‘장애(bodily injury)’에 근거한 것인지,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사고가 ‘우연한 사고(accident occurrence)’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주요쟁점이 되고 있음
    - 미(美)지방정부의 손해배상청구는 일반 시민에게 해를 주는 불법행위인 공적불법방해(public nuisance)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것이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보험회사의 방어 의무가 발생됨<sup>9)</sup>
    - 보험계약상의 ‘사고’는 행위나 손해 중 하나가 우연할 경우에 해당되며,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회사의 방어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논점임<sup>10)</sup>
    - 기타 논점으로는 화해금으로 피보험자가 지급하는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부정이득반환금(restitution disgorgement), 벌금제재금(fines and penalty)을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쟁이 있을 수 있음
  - 이 문제를 둘러싼 보험소송의 판결은 사건에 따라 다르게 내려졌으며, 본 문제를 둘러싼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임 **kiri**

8) 미국의 기업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신체장애(bodily injury)’ 또는 ‘재물손괴(property occurrence)’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할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인데, 피해자 등 제3자로부터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방어할 의무(duty to defend)를 갖는다는 것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음

9) ‘장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적합성이 쟁점이 된 사례: 켄터키 주(州)의 미연방지방법원은 웨스트 버지니아 소송(약물 과다로 인한 신체적 상해에 대하여 공공재원을 지출한 데 대한 구상을 요구)에서 신시내티(Cincinnati) 보험회사가 리치(Richie) 제약회사를 방어할 의무가 없다고 선고함. 주(州)에서 제공하는 의료감시 프로그램 등의 공적비용 지출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특정 개인의 ‘신체장애로 인한(because of bodily injury)’ 손해에 따른 청구가 맞지 아니하므로 보험회사의 주장을 인정함으로써 보험회사에 방어 의무는 없다고 판결(Cincinnati Ins.Co.v.Richie Enters., No 12-cv-186m 2014 WL3513211(W.D.Ky. July 16, 2014)). 반면, 일리노이 주(州)법을 적용한 신시내티(Cincinnati) 보험회사와 H.D. 스미스 제약회사와의 소송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약물 과다로 인한 비용을 지출했다면 보험회사가 부모가 지출한 비용을 배상해 줄 책임이 있다’고 신시내티 보험회사 변호인이 인정함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부모가 아닌 정부인 경우에도 결과는 다르지 않다고 판결해 웨스트 버지니아 주가 요구한 배상금을 신시내티가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Cincinnati Ins. Co.v.H.D.Smith, LLC, 829F.3d771(7th Cir.July 19, 2016)) 내린 바 있음

10) ‘사고(accident occurrence)’에 해당성이 제기된 사례: 리버티뮤추얼(Liberty Mutual Fire Ins.Co v. J.M. Smith Corp.)사의 사례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州)법하에서 사고는 고의적인 행동의 결과로 의도하지 않은 상해(injury)가 발생한 경우,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에 방어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지지함. 반면, 트래벨 보험회사(Travelers Property Casualty Co. v. Actavis, Inc.)의 사례는 캘리포니아 주(州)법하에서 비록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상해를 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추가적이고 예견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상해가 아닌 한, 피보험자의 의도행동에 의해 발생한 상해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